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 추가 등〉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8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 추가	2
2.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	5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6일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 추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처리 대행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동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략) ② <u>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u> 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u> -----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의5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차량 안전장치·보호장구·작업안전수칙 등 안전기준²⁾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은 ① 지방자치단체 직영(동법 제14조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동법 제14조제2항)에만 한정됨.³⁾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과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업체는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2022년 기준 전체 5,61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중 4,597개⁴⁾(81.9%) 업체는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상황임.

[2022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체 현황]

구분	합계	지자체	민간업체*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자
개소	5,615	186	910	2,662	1,857

* 민간업체 중 832개소는 지방자치단체 대행 업체로 법상 안전 기준이 적용됨

자료 : 2022년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규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만 한정된 안전 기준 의무 적용 대상을 법률에서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확대하

2) ▲(차량 안전장치)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보호장구) 안전화,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주간 작업, 3인 1조, 악천후 보호조치 등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은 지자체 직영 업체(186개) + 지자체 대행업체(832개) = 1,018개 업체

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기준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에서의 안전기준 의무 적용 대상 비교]

		현행	개정안
근거		법 제14조의5제3항 시행규칙 제16조의3	법 제14조의5제2항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직영	○	○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	○	○
	폐기물처리 신고자 (민간업체)	×	○

다만,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민간업체의 현장 여건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세한 고물상까지 안전 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행정비용이 가중되어 규제비용이 과도할 수 있어 최소한의 적용 예외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지역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률에서의 일률적 적용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범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②(생략)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작업자가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차량 배출가스가 작업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

	<u>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할 것</u> <u>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u> <u>시급하게 처리할 사유가 있거나 주</u> <u>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u> <u>려가 있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u> <u>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u> <u>지 아니하다.</u> <u>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u> <u>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u> <u>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u> <u>로 할 것</u> <u>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u> <u>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작업자</u> <u>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u> <u>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u> <u>필요한 조치를 할 것</u> <u>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u> <u>전기준을 준수할 것</u>
--	---

현행법 제14조의5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은 안전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중 “주간작업 원칙, 3인 1조 작업 원칙,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중지 등 조치 의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 (적용대상) ▲지자체장(직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대행)	
○ (안전기준)	
▲(차량 안전장치)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보호장구) 안전화,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주간 작업, 3인 1조, 악천후 보호조치 등	
○ (안전점검 개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실시	
▲(이행계획 제출) 대행업체→시·군·구(매년 11월 30일까지), 시·군·구→시·도→환경부(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실적 제출) 대행업체→시·군·구(매년 1월 31일까지), 시·군·구→시·도→환경부(매년 2월 말일까지)	
▲(현장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조사계획수립
매년 4월	
→ 지자체 통보	→ 실태조사 시행
매년 5월~11월	
→ 실태조사 결과	
매년 12월	
○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한국폐기물협회(업무 위탁)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나(※참고자료 1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참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 17명, 부상 2,004명(중상 352명, 경상 1,652명)이 발생하고, 해마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작업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⁵⁾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기타
누적	2,109	17	352	1,652	88
2018년	295	3	58	232	2
2019년	388	2	63	310	13
2020년	427	3	78	334	12
2021년	471	6	72	377	16
2022년	528	3	81	399	45

자료 : 한국폐기물협회

5) 한국폐기물협회,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최종보고서(2023.12.)

이에 개정안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실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여건과 무관하게 안전기준을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는 법률에 안전기준을 규정할 경우 긴급한 안전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024.2.7.)

I 배경 및 목적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19.4.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19.12.31.) 개정
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
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지자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행업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종사자) 환경미화원

II 적용 대상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III 안전 기준

- ☐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 ☐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
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